

민간투자사업의 규제 개혁 효과

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공급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

박 용 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yspark@cerik.re.kr

민간투자사업은 2007년 사업 건수 122개, 총 사업비 13.3조원 수준에서 2015년에는 8개, 3.5조원 수준으로 급감했다.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리스크는 크지만 민간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민간투자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정부는 ‘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’을 2015년 5월에 개정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. 정부와 민간이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3의 사업 방식인 BTO-risk sharing(위험분담형)과 BTO-adjusted(손익공유형) 방식을 도입했다. 그리고 임대형(BTL)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할 수 있었으나 규제 개선을

통해 BTL 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을 허용했다. 또한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(경찰청의 지방청 및 경찰서 제외), 화장시설, 아동복지시설, 택지 공영차고지를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 포함시켰다. 이 외에도 민간 사업자 영세율의 일몰제도를 2015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했으며, 보증 한도는 3,000억원에서 4,000억원으로 확대했다.

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및 건설업계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.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확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, 국민의 삶의 질을 점차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**END**

민간투자사업 범위 확대 및 여건 개선

개선 전

- 기존 BTO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‘고위험- 고수익’ 구조로 사업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추진 곤란



개선 후

-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BTO-rs, BTO-a 방식 도입, BTL 민간제안 허용 및 공공청사 민자사업 가능, 사업자 영세율 일몰 연장(2015→18년, 보증 한도 확대 3,000억→4,000억원)
- ▶ 「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」 (2015년 5월)